

##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

의안 번호	106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3. .
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### 1. 제안사유

-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설치한 제천수상아트홀은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각종 이벤트성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, 보다 활용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코자 함

### 2. 위탁 필요성

- 제천수상아트홀은 국내 최초로 수상에 설치한 다목적의 수상관광시설 물로 선체 1,320㎡에 무대, 휴게실(대기실 겸용), 연습실, 창고, 보조바지선, 진입부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문화예술 공연과 다양한 관광이벤트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용도를 갖고 있으며 선체 시설물은 시의 직영관리가 필요하나
- 지상1층에 설치한 수상휴게소(대기실 겸용)는 차, 음료, 건과류 판매 등 휴게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시에서 직영 수익사업이 지난하며,
- 본 시설의 활용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이 필요한바,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담인력의 배치 지난 및 상당한 예산의 투입과 전문가 섭외 등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홍보는 물론 폭넓은 대외 섭외력과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이 바람직함.

### 3. 위탁개요

- 위탁운영대상(시설 및 프로그램)
  - 시 설 명 : 제천수상아트홀
  - 위 치 : 제천시 청풍면 교리(청풍 만남의광장 앞 수상)
  - 시 설
    - 휴게실(1층대기실) : 100㎡(30평)

- 평시 : 차, 음료, 건과류 등 판매시설 활용(휴게실 운영)
- 공연행사시 : 대기실 활용
- 행사,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
  - 기획프로그램 및 상설프로그램 개발로 운영 활성화
- 위탁운영 조건
  - 휴게실에 대하여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사용료 납부
    - 감정평가액의 50/1,000에 해당하는 금액
  - 유료 공연시 수입액의 5%를 제천시에 납부(관리운영조례 제8조 제3항)
  - 운영관리비 : 수탁자 부담(전기료, 냉난방비 등)
  - 운영비지원 : 없음(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검토가능)
  - 위탁관리기간 : 3년 이내

#### 4. 수탁자선정 기준

- 상설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현지에 둘 것
- 음향·조명 등 기자재를 조작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의 기사1명 확보
- 전문적 공연이 가능한 음향장비를 갖출 것
-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
- 매월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2회 이상 운영, 활용의 연속성을 유지
- 프로그램 및 공연섭외 능력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력이 있을 것
- ※ “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”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

#### 5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, 동법 제135조 제2항
-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
-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~제7조

#### 6. 참고자료

- 사업추진현황
- 전경사진
- 관계법령(발췌분)

## <민간위탁 필요성 보충설명자료>

- 선체시설물의 전반적 관리는 제천시에서 관리(청풍관광개발사업소)
  - 시설물의 기본적인 유지관리 보수
  - 수위에 따라 양카체인 조정등 안정유지를 위한 기술력(노하우)필요
  
- 휴게실 및 프로그램 운영

### <휴게실>

- 평시 수경분수체험 및 시설견학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·음료·건과류 판매의 휴게실 운영
- 공연 및 이벤트 행사시 대기실로 활용

### <프로그램 운영>

- 본 시설을 청풍호반의 랜드마크화(대표적 명소화) 해야 할 필요성
  - 제천 청풍호 하면 수상아트홀이 연상되는 질적 수준높은 프로그램 개발운영 필요
  - (예) 정동진 = 해와 일출을 연상
  - 유명세를 타는 명소화로 탐방관광객에 의한 간접 지역경제 효과 극대화
  
- 민간기업 마인드의 자유분방한 홍보 및 대외 섭외력 필요
  - 유명 연예기획사, 예술인등 접촉 섭외능력 발휘가능
  - (질 높은 공연 및 행사)
  
- 자유스러운 발상의 다양한 이벤트성 프로그램 운영 가능
  
- 시의 직영운영에는 전담인력의 배치 지난, 예산의 지속적 투입애로
  - 경직된 절차와 사고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에 한계성
  - 유명기획사, 예술인, 연예인 등 섭외력 부족 등 지속운영 지난

## 제천시수상아트홀 조성현황

- 수상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보고즐길거리 제공 및 체류관광 명소화
- 상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

### □ 추진배경

- 중부내륙의 바다 청풍호반에 국내 최초의 수상 관광레포츠 시설을 조성하여 수경고사분수, 번지점프장, 인공암벽장, 청풍문화재단지, 수상항공, 수상레저, 청풍리조트, 관광유람선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계하는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조성
- 수상아트홀 조성으로 청풍호반을 다양한 문화예술, 관광레포츠 수요에 부응하는 국내 유일의 호반 수상관광명소로 특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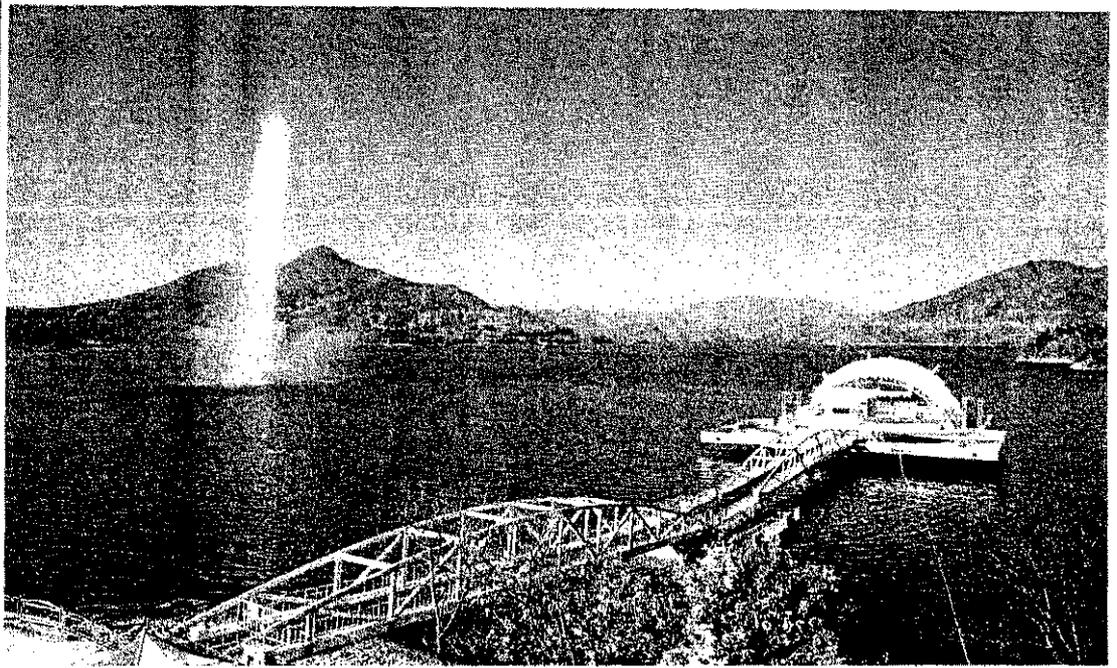
### □ 사업현황

- 위 치 : 제천시 청풍면 교리 만남의 광장 앞 수상
- 주요시설 : 바지선 1,320㎡(L=44m, B=30m), 보조바지 130㎡(L=13m, B=10m), 진입부교(L=39m, B=3m 2개소),  
음향·조명(야간경관조명 포함) 1식
- 사업비 : 4,298백만원(국969, 도291, 시3,038)  
- 예산은 관광자원개발 균특회계 재원 및 지방비
- 사업기간 : 2004. 11. 11~2005. 11. 4
- 사업주체 : 제천시장(문화관광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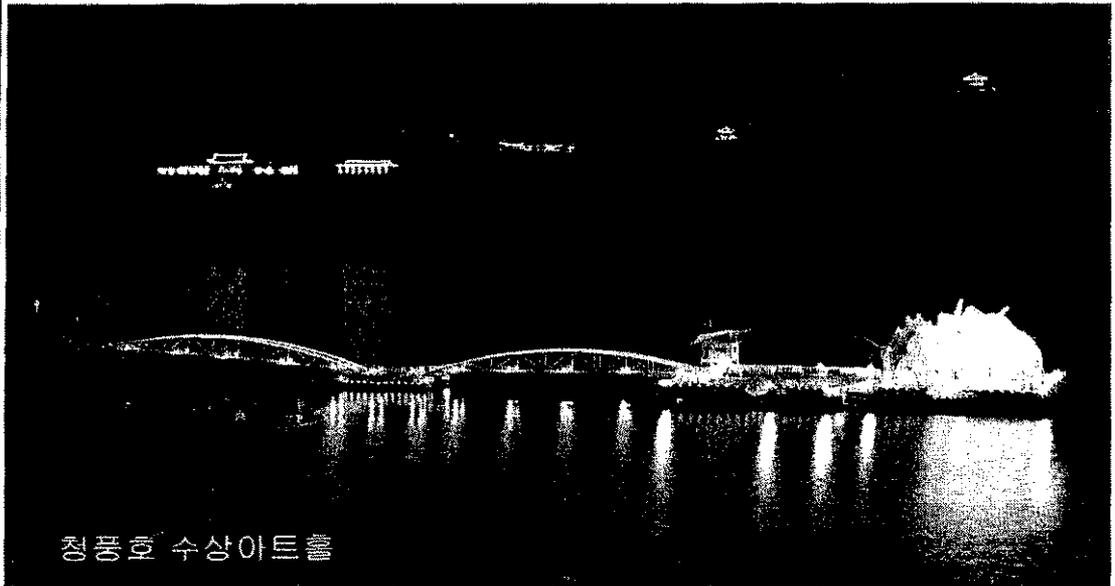
### □ 사업효과

- 문화예술 공연, 분수체험, 방생, 수상레저, 야외수상결혼식, 세미나 장소 등 다목적 관광레저 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차별화를 통한 관광명소로 정착
-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종합관광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

## 수상아트홀 전경사진



사진설명 주간



청풍호 수상아트홀

사진설명 야간경관조명

## 관 계 법 령

### 지방자치법

**제95조 (사무의 위임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35조(공공시설)**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.

### 지방재정법

**제109조(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)** ①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승인에 앞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###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

**제5조(공공시설의 위탁관리)**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,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**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**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

**제6조(수탁기관 선정)**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,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- 제7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위탁 대상사무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